의 안 번 호

1662

【울산광역시 중구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】

검 토 보 고 서

1. 검토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0. 10. 6.(화)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
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0. 10. 6.(화)

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0. 10.15.(목)

2. 개정이유

○ 「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개정으로 국 신설·명칭 변경 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정책자문단 위원수를 확대하여 정책자문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으로 국 신설·명칭변경에 따른 정책자문단 위원수 및 위촉분야 확대(안 제3조제1항, 제3항)
 - 정책자문단 위원수: 30명 → 33명
 - 위촉분야 : 복지경제 → 일자리경제, 복지환경
- 나. 분과위원회 신설 및 조정(안 제5조제1항, 제2항)
 - 일반행정, 복지경제, 건설도시 등 3개 분과
 - → 일반행정, 일자리경제, 복지환경, 건설도시 4개 분과
 - 각 분과위원회 위원수 10명 → 8명
- 다. 당연직 위원을 구체적으로 명시(안 제3조제3항)
 - 당연직 위원: 각 국의 국장
- 라.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(안 제5조제2항, 안 제6조제2항)

4. 근거법규

○ 「지방자치법」제9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 사항으로 「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 개정으로 국 신설·명칭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사항으로
- 정책자문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며, 「지방자치법」등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,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적합하므로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됨.

근 거 법 규

지방자치법

- 제9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 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 - 1. 지방자치단체의 구역, 조직,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
 - 2.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
 - 3. 농림·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
 - 4.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 · 관리에 관한 사무
 - 5. 교육 · 체육 · 문화 · 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
 - 6.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